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5. 9. 24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결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9월 8일

나. 발 의 자: 최인순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9월 18일

라. 상정일자: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9. 2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최인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는 구·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므로,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 보호와 건전 육성 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청소년지도협의회 사업비 지원 신설(제25조제2항)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☐ 개정 배경 및 취지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27조에 따라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

청소년지도위원(이하 “지도위원”이라 한다)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영등포구 지도위원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」 제2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.

- 또한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구와 동에 지도위원으로 구성된 청소년지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, 현재 영등포구는 대림1동을 제외한 17개 동에서 협의회가 구성·운영되고, 동 협의회는 회장으로 구성된 구연합회가 활동하고 있음.
- 협의회는 청소년 체험학습, 장학금 전달, 캠페인, 계도활동 등 각 동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현행 조례 제25조의 지원 규정은 지도위원 개인의 임무 수행을 위한 수당·여비·교육 기회 제공 등에 한정되어 있어 협의회에 사업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에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.
-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·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, 협의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5조제2항은 구·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.
- 그 밖에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구·동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- 사업비 지원을 통해 각 동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청소년 육성·선도·보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인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04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9. .

발 의 자: 최인순、차인영、이순우
정선회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현행 조례에는 구·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므로,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 보호와 건전 육성 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청소년지도협의회 필요경비 등 지원 신설(제25조 2항)

나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함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청소년 기본법」, 「청소년 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반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청소년기본법」 및 「청소년보호법」”을 “「청소년 기본법」 및 「청소년 보호법」”으로 한다.

제5조제6호 중 “기풍을”을 “분위기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청소년지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청소년지도협의회”로 한다.

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구·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33조제3항제4호 중 “모·부자가정”을 “한부모가족”으로 한다.

제48조의 제목 “(협조체제유지)”를 “(협조 체제유지)”로 한다.

제49조 중 “보호법 제49조제2항”을 “보호법 제49조”로 한다.

제51조제2항 중 “별지 제1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54조제1항 중 “별지 제2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청소년 기본법</u> 」 및 「 <u>청소년보호법</u> 」 등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 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소년 육 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청소년 기본법</u> 」 및 「 <u>청소년 보호법</u> 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(청소년의 달) 구청장은 기 본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,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1. ~ 5. (생 략) 6. 그 밖의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 한 구민적 <u>기풍</u> 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	제5조(청소년의 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----- ----- <u>분위기</u> ----- -----
제19조(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) ① 청소년지도활동과 상 호협력에 필요사항을 관계기관 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구와 동에 <u>청소년지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</u> 를 각각 설 치·구성할 수 있다. ②·③ (생 략)	제19조(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청소년지도협의회</u> 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필요경비 등 지원) (생략)

<신 설>

제33조(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) ①·② (생략)

③ 구청장은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·모범 청소년 해외견학 대상자 선발 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하여야 하며,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4.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모·부자가정 대상자녀

5. (생략)

제48조(협조체제유지) (생략)

제49조(신고포상금 지급) 구청장은 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1조(신고방법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

제25조(필요경비 등 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구청장은 구·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33조(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한부모가족 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협조 체제유지) (현행과 같음)

제49조(신고포상금 지급) -----
-- 보호법 제49조-----

-----.

제51조(신고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공무원은 신고내용을 <u>별지 제1호 서식</u>에 따라 기록·보존하여야 하며,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54조(지급방법) ① 포상금은 <u>별지 제2호 서식</u>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, 지급액은 별표 2의 지급기준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 ② (생략)	----- <u>별지 제1호서식</u>----- ----- ----- -----. 제54조(지급방법) ① ----- <u>별지 제2호서식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